

국가기술표준원 유권해석 질의

민원 신청 내용

제목	KS F 3109(문세트)의 손끼임 관련 KS 개정사항 시행일 적용 기준은?
내용	<p>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</p> <p>KS F 3109 문세트의 손끼임 방지장치와 관련한 최근 KS 개정사항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.</p> <p>KS F 3109(문세트) 안전성 시험은 당초 도어클로저 또는 손가락 끼임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육안검사로 이루어져 있었다가, 금번 KS F 3109 개정에서는 그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.</p> <p>즉 실내외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과 개폐 반복성 시험 후 손가락 끼임 상해 방지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.</p> <p>그리고 이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-15호로 2021년 1월 26일 고시되었으며, 관보 고시문 부칙에 2021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.</p> <p>여기서 질의를 드립니다.</p> <p>이번 KS F 3109 문세트의 손끼임 방지장치 KS 개정사항의 시행일, 즉 개정된 사항으로의 설치 및 시험방법 적용일이</p> <p>갑설) 법률의 개정과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2021년 01월 26일 이후 사업승인일로부터 이의 개정 사항을 적용하는 것인지? (현재 공사 진행중인 현장에서는 개정 사항 미적용 가능)</p> <p>을설) KS F 3109 문세트 예고고시를 사전 시행하고 이의 개정을 하였기에 2021년 01월 26일 이후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의 개정된 변경된 KS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? (현재 공사중인 현장도 개정 사항 적용)</p> <p>이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/p>

첨부 파일

▶ 담당부서 자원총괄과 ▶ 담당자 정복신 ▶ 연락처 043-870-5600

■ 질의요지 :

KS 개정사항을 갑설) 법률과 같이 사업승인일로 적용하는지? 을설)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?

국가기술표준원 유권해석 답변

답변 내용

답변일	2021-05-04 16:15:37
처리결과 (답변내용)	<p>1. 안녕하십니까? 국민과 함께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.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번호: 1AA-2104-1097496)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</p> <p>2. 귀하의 민원내용은 KSF3109(문세트)의 시행일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.</p> <p>3.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KSF3109:2021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-0015호(2021년 1월 26일)에 고시하였고, 부칙에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1월 26일부터 출하되는 제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</p> <p>따라서 KS인증제품으로 설명드리면, 2021년 1월 25일전에 생산된 문세트(KS인증제품)은, 표준 개정(2021.1.26)이후에도 유효한 KS인증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KS인증제품의 해당 KS가 개정된 경우, KS개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KS인증제품을 생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다만, KS표준은 강제표준이 아니므로 관련법률, 시방서, 설계 등에 따라 KSF3109:2021에 적합한 자재를 요구할 경우에 KSF3109:2021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.</p> <p>참고로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와 관련된 강제사항은 「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742호)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4.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(전화: 043-870-5377, kimnhkats@korea.kr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</p>
만족도평가 가능일자	2021-08-04 16:15:37

▶ 담당부서 지원총괄과

▶ 담당자 정복신

▶ 연락처 043-870-5600

■ 답변요지 :

KS 개정사항 반영. 다만 KS 표준은 강제표준이 아니므로 LH 시방서에 어떻게 언급되어 있느냐가 핵심 LH 시방서는 개정된 KS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개정사항 수급업체는 반영하여야 함.

